

수소용품 제조사업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일
신고인	상호		
	대표자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	
	사무소 소재지	전화번호	
	사업소 소재지		
변경 내용	구분	변경 전	변경 후
	상호의 변경		
	대표자의 변경		
변경 사유			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 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대표자 변경의 경우 변경되는 대표자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